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

본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교협 심의 결과나 본교 편제 개편 또는 정원 조정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확정, 공지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금오공과대학교

[입학본부]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전형별 지원자격 (입학정원의 2% 이내)	1. 외국연주 교포자녀 2.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3.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4.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5.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1번 ~ 5번을 통합하여 지원자격 명시하였으나 우리대학 2021학년도 기본계획에서는 세분화함

※ 특이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해외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 재학 및 근무기간에 산정함
- * 휴교: 개인소명서 및 해당학교 휴교확인서, 휴업: 해당기관 및 사측의 휴업증명서(원본으로 제출)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입학정원의 2% 범위 : 해외근무자의 자녀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하되,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

모 집 단 위	학과 및 전공(과)	입학정원의 2% 범위	
		최대 모집 가능 인원 (모집단위별 10%)	입학정원의 2% 범위
기계공학과		8명	24명 이내
기계설계공학과		4명	
기계시스템공학과		12명	
전자공학부	정보전자전공	20명	
	제어및로봇전공		
	전자통신전공		
	전자및전파전공		
	전자IT융합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4명	
	건축공학전공		
산업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7명	
	디자인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11명	
화학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9명	
	소재디자인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환경공학과		3명	
응용화학과		3명	
토목공학과		4명	
컴퓨터공학과		9명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명	
광시스템공학과		3명	
메디컬IT융합공학과		3명	
응용수학과		3명	
경영학과		4명	
합 계		112명	24명

2. 입학정원 제한 없음 :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외국인·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3. 2021학년도 모집단위 중 건축학부는 전기만 선발함

1.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자격구분	자격요건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공통학력요건		
			학생			보호자		배우자			
			이수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정원 외 모집 (입학 정원 의 2% 이내)	해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 / 4 이상	3년	3년	2 / 3 이상	3년	2 / 3 이상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정원 외 모집 (입학 정원 제한 없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간	-	-	-	-	-	-	-	고교 졸업(예정)자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초, 중, 고 전 교육과정 기간	-	-	-	-	-	-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결혼 이주자	초, 중, 고 전 교육과정 기간	-	-	-	-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통일부 확인	-	-	-	-	-	-	-	

2. 지원자격 관련 기준 및 해석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의 범위

1.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자
2. **해외영주 교포자녀:** 부, 모, 학생이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하는 자
3. **외국국적자:** 한국인으로서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한 외국인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5.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자
6. **외국인:**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화교

□ 해외 파견 근무자의 범위

1.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상사직원**
 -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나.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마.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범위**
 - 가.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나.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4.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5.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 연수 ·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

1. **외국학교의 인정기준**
 - 가.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 종교 ·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만 인정(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
 - 다.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2. **고등학교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3. **재학기간 인정기준**
 - 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
 - 1) 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

나. 외국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 기준

- 1) 고등학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과정 재학. 다만 외국학교에서 6학기를 이수하였으나 학제차이로 인하여 같은 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 1학기 이내의 중복학기를 외국 재학기간으로 인정
- 2)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의미

4. 전 교육과정 이수자

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과정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0~12(13)학년 과정)

- 나.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다.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 년 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 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 ~ 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당해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1) 2개국 이상에서 이수한 자에 한해 지역 간 학제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학기간의 부족분은 1학기 (6개월)이내에서 인정
- 2)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해외 영주 · 거주 · 체류 · 근무기간의 정의

1. 보호자가 근무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2. 학제 차이로 인해 국내 수학기간과 외국 수학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이나 학기를 중복 이수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1개 학기)까지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함
3. 외국학교에서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학생의 해외 거주·체류기간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4. 해외영주(거주), 근무,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부분만 입학 자격으로 인정함
 - 가.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에 기재된 기간
 - 나.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 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다. 방학 등 학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 및 업무상 일시 귀국한 경우는 해외거주(체류) 기간으로 인정
 - 라.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마.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근무기간
5.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해외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 재학 및 근무기간에 산정함

* 휴교: 개인소명서 및 해당학교 휴교확인서, 휴업: 해당기관 및 사측의 휴업증명서(원본으로 제출)

□ 외국인의 최저학력기준

- 한국어 : 원서접수 시 TOPIK 3급 이상 취득 또는 우리대학 한국어학원의 어학시험 3급 이상 합격자
- ※ 입학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하는 것을 권장

□ 학위(학력)입증서류

1.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입증서류
2.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출신학교 소재지국의 주한 공관영사의 확인을 받은 학력(학위) 입증서류
3.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신청 방법
 - 1) 학력인증 :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http://www.chsi.com.cn>)에 신청
 - 2) 학위인증 :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중심
(교육부 학위인증센터, <http://www.cdgdc.edu.cn>)에 신청
 - 3) 한국 내의 공식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 <http://www.cis.or.kr>)를 통해 신청

구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입학원서(본교서식) 3. 지원자 종합기록표(본교서식) 4. 자기소개서(본교서식) 5. 학업계획서(본교서식) 6. 코로나-19 소명자료(해당자에 한함)
해외근무자의 자녀 (재외국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7. 여권사본(부, 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 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해당)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해당)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해당)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 증명서(현지 자영업자 해당)
전 교육과정 이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7. 은행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송금(환전)증명서(외국인) 8.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9. 재정보증인의 수입증명서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 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6. 은행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송금(환전)증명서 7.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8. 재정보증인의 수입증명서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여권사본 10. 언어능력시험성적표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